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0
----------	-----

2023. 9. 7.(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7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실태조사, 홍보,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가. 제정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 청년 인구는 지역 내 유입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수가 더 많고, 충북 역시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sup>1)</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내 청년 예술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북 예술인은 타 지역 대비 소득이 낮고,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활동 수행이 축소 및 단절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늘어났음. 특히 기성 예술인과 비교해 경력이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sup>2)</sup>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북 예술인은 총 3,129명이고, 그중 2, 30대 청년 예술인은 1,096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1) “충북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심화”, 충청타임즈(2022. 6. 14.)  
 “충북청년 유출방지 대책부터 세워라”, 충북일보(2022. 6. 29.)  
 “직업 때문에…충북 떠나는 청년들”, 충청매일(2021. 12. 30.)

2) 『2021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충북문화재단(2022. 3.) 221면, 243면

### 《 충북 청년 예술인 현황 》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원(명)	3,129	441	655	454	570	631	303	75
비율(%)	100	14	21	14.6	18.2	20.1	9.7	2.4

※자료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완료자(2023. 8. 29. 기준)

- 기존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21. 2. 10. 제정)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예술인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년 예술인에 특화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부족함.
- 본 조례안과 비교 시 “청년 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 창작공간 제공, 창업 등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아 청년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충북 문화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도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충북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 예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8곳임(서울, 경남, 광주, 전남, 제주, 경기, 대구, 인천).

### 《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번호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25
2	경남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01
3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15
4	전남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30
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31
6	경기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04-21
7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10-11
8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02-20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아래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위탁
제2조	정의(청년, 청년 예술인)	제7조	실태조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홍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포상
제5조	지원 사업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 ○ 안 제1조(목적)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음을 밝힘.

### ○ 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개념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청년기본법」 제3조<sup>3)</sup>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과 달리 청년의 범위를 정한 것에 문제가 없음.

– 본 조례안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청년의 범위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현재 충북 내 청년 지원 사업<sup>4)</sup>의 대상이 도내 39세 이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북 내 통일성 있는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률과 조례 간 연령 범위의 차이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4) 충북청년희망센터(청년광장,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 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청년 예술인’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sup>5)</sup>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의미함.
- 향후 인구구조의 현저한 변화 등을 사유로 본 조례안의 육성·지원 대상인 충북 청년 예술인의 연령을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차후 논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북 내 청년 정책 간 혼선을 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및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상 규정된 청년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음.

### 《 타 시도 관련 조례상 청년 예술인 연령 》

(2023. 8. 29. 기준)

	청년 예술인 연령 범위	지 역
1	19세 이상 34세 이하	(3곳) 서울, 경기, 경남
2	<b>19세 이상 39세 이하</b>	(3곳) 대구, 광주, <b>충북</b>
3	18세 이상 39세 이하	(2곳) 인천, 제주
4	18세 이상 45세 이하	(1곳) 전남

####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이는 유사·중복 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청년 예술인의 적절한 조치임.

#### ○ 안 제5조(지원 사업)

-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사업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안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6조(위탁)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 안 제7조(실태조사)

- 안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안 제8조(홍보)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음.

### ○ 안 제9조(포상)

-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임.

###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미래세대인 도내 청년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위 조례의 제정으로 기성세대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자립기반이 미흡한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충북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 제정 및 활성화로 도내 청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청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충북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 예술 활성화가 지닌 긍정적인 가치와 역할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 역시 기대되므로 향후 조례안 내용을 비롯한 도내 청년 예술인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절차적인 면에 있어 집행부 협의를 거치고, 조례안 예고 결과 달리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도 없는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④(중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2.10. 조례 제4506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의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 3.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단가산출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

※ 본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현재('23.7.24.) 청년 예술인(단체) 대상 지원사업으로 산출함.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90,000천원)

· 청년예술가 지원금 : 16명 \* 5,000천원 = 80,000천원

· 회의비 : 80명 \* 25천원 = 2,000천원

· 행사운영비(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 8,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80,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지원금 : 12개단체 \* 6,660천원 ≙ 8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청년예술단체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